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호
**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
고시(경미한 변경)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제2007-177호(2007.06.07)로 변경지정, 제2008-173호(2008.05.2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제2010-449호(2010.12.09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1-126호(2011.05.19), 제2011-187호(2011.07.07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2-133호(2012.05.24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2-195호(2012.07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2-255호(2012.09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2-282호(2012.10.25), 제2013-76호(2013.03.14), 제2013-112호(2013.04.04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168호(2013.05.30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184호(2013.06.1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290호(2013.09.05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16호(2014.01.16), 제2014-55호(2014.02.20), 제2014-197호(2014.05.2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217호(2014.06.12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299호(2014.08.28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445호(2014.12.1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6-126호(2016.04.2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6-134호(2016.05.04.), 제2016-165호(2016.06.16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1월 26일
서울특별시장

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)

명 칭	유 형	위 치	면 적(㎡)			변경사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	주거지형	수색동 증산동	793,028.2	증)3	793,031.2	단순착오(필지누락)에 따른 면적정정(수색7구역)

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없음

다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

라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793,028.2	증)3	793,031.2	100.0	
주거 용지	소 계	518,741.3	—	518,741.3	65.4	
	공동주택	452,028.9	—	452,028.9	57.0	
	상업용지	13,685.0	—	13,685.0	1.7	
	복합용지	29,768.8	—	29,768.8	3.7	
	주택용지	145.0	—	145.0	0.1	
	유 치 원	2,882.4	—	2,882.4	0.3	
	종교용지	6,915.7	—	6,915.7	0.9	
	존 치	13,315.5	—	13,315.5	1.7	
공공 시설 용지	소 계	274,286.9	증)3	274,289.9	34.6	
	도 로	108,570.3	증)3	108,573.3	13.7	
	보행자도로	5,589.4	—	5,589.4	0.7	
	공 원	40,046.7	—	40,046.7	5.0	
	녹 지	23,776.6	—	23,776.6	3.0	
	광 장	2,513.3	—	2,513.3	0.3	
	공공공지	2,194.0	—	2,194.0	0.3	
	열공급설비	【4,899】	【증) 37.9】	【4,936.9】	—	중복결정
	전기공급설비	【1.4km 중 0.73km】		【1.4km 중 0.73km】	—	수색~향동
	변전소	8,486.0	—	8,486.0	1.1	
	공공청사	3,967.0	—	3,967.0	0.5	
	학 교	69,434.3	—	69,434.3	8.8	
	사회복지시설	4,278.3	—	4,278.3	0.5	
	도서관	3,781.0	—	3,781.0	0.5	
	문화시설	1,650.0	—	1,650.0	0.2	

※ 변경사유 : 단순 착오(필지 누락)에 따른 면적정정(수색7구역)

※ 열공급설비 및 전기공급설비 표시추가와 전기공급시설을 '변전소' 로 표시정정

1) 열공급설비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26호(2016.4.28.)에 의한 중복결정(변경) 고시 누락에 따른 정정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5.22.)에 의한 최초 중복결정

2) 전기공급설비 :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151호(1992.5.16.)에 의한 최초 결정

※ 【 】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

2) 인구주택수용계획 : 13,019호 / 35,498인(변경)

구분	계획세대			인구수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12,991	증)28	13,019	35,422	증)76	35,498	2.7인/세대 (2020서울시도시 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)
촉진구역	소계	12,744	증)28	12,772	증)76	34,485	
	40㎡이하	1,137	증)1	1,138	증)3	3,072	
	40~50㎡	968	증)1	969	증)3	2,617	
	50~60㎡	3,307	증)45	3,352	증)121	9,050	
	60~85㎡	5,867	감)19	5,848	감)51	15,790	
	85㎡초과	1,465	-	1,465	-	3,956	
준치지역	공동주택	-	-	-	-	-	
준치지역		247	-	247	1,013	-	1,013

3) 교육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: 변경없음

5) 교통계획 : 변경없음

6) 경관계획 : 변경없음

7)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

가) 주택재개발사업부문(변경)

구분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	건폐율		계획용적률		높이(층수)		추진 단계	정비 유형	비고	
									층수	최고층수(m)				
기정	21	수색동	341	7.0	60%	240%이하		14.8층	20층 (65m이하)		3	전면개발	수색13촉진	
기정	22	수색동	115	6.6	50,60%	267.9%이하		19.9층	30층 (92m이하)		2	전면개발	수색6촉진	
기정	23	수색동	412	3.2	60%	245.95%이하		17.5층	22층 (66m이하)		2	전면개발	수색7촉진	
기정	24	수색동	16	3.0	60%	263.9%이하		18.6층	22층 (64m이하)		2	전면개발	수색8촉진	
변경	24	수색동	16	3.0	60%	263.9%이하		18.6층	22층 (66m이하)		2	전면개발	수색8촉진	
기정	25	수색동	30	3.6	9-1	50%	9-1	274.0%이하	25.4층	9-1	30층 (92m이하)	2	전면개발	수색9촉진
					9-2	60%	9-2	439.9%이하		9-2	22층 (85m이하)			
기정	29	수색동	361	6.1	60%	257.07%이하		18.5층	25층 (80m이하)		2	전면개발	수색4촉진	
기정	30	증산동	216	7.9	2-1 2-2 2-3	50%	2-1 2-2 2-3	247.7%이하	22층	2-1 2-2 2-3	30층 (92m이하)	2	전면개발	증산2촉진
					2-4	60%	2-4	290.9%이하		2-4	25층 (90m이하)			
기정	31	증산동	205	17.2	60%	247.0%이하		18.1층	30층 (92m이하)		3	전면개발	증산4촉진	
기정	32	증산동	157	11.3	60%	263.7%이하		19.7층	30층 (92m이하)		3	전면개발	증산5촉진	

나) 주택재건축사업부문 : 변경없음

다)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: 변경없음

8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	위 치	면 적(㎡)			사업의 종류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-	793,028.2	증)3	793,031.2		
촉진 구역	소 계(16개구역)		695,461.8	증)3	695,464.8		
	수색1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366-11일대	4,422.0	-	4,422.0	도시환경정비사업	
	수색2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367-6일대	5,026.0	-	5,026.0	시장정비사업	
	수색3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106-1일대	3,704.0	-	3,704.0	도시환경정비사업	
	수색4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361-10일대	61,936.0	-	61,936.0	주택재개발	
	수색5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102-20일대	2,961.0	-	2,961.0	도시환경정비사업	
	수색6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115-5일대	66,062.0	-	66,062.0	주택재개발	
	수색7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412일대	31,793.6	증)3	31,796.6	주택재개발	
	수색8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17-28일대	29,998.0	-	29,998.0	주택재개발	
	수색9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30-2일대	36,458.6	-	36,458.6	주택재개발	
	수색10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160-1일대	11,376.1	-	11,376.1	도시환경정비사업	구역해제
	수색11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32-13일대	3,163.0	-	3,163.0	도시환경정비사업	
	수색12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369-3일대	4,453.0	-	4,453.0	도시환경정비사업	
	수색13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341-6일대	69,727.0	-	69,727.0	주택재개발	
	증산2재정비촉진구역	증산동 216-10일대	78,755.2	-	78,755.2	주택재개발	
	증산4재정비촉진구역	증산동 205-33일대	172,932.0	-	172,932.0	주택재개발	
	증산5재정비촉진구역	증산동 157-34일대	112,694.3	-	112,694.3	주택재개발	
존치정 비구역	소 계(1개구역)		40,966.90	-	40,966.9		
	수색2존치정비구역	수색동 160일대	40,966.9	-	40,966.9	지구단위계획	
존치지역		-	56,599.5	-	56,599.5		

※ 존치건축물 : 수색초, 증산초·중, 두산위브APT, 문영1차APT

※ 변경사유 : 단순 착오(필지 누락)에 따른 면적정정(수색7구역)

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(변경)

가) 수색1~6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 없음

나) 수색7 재정비촉진구역(주택재개발사업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
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31,793.6	증)3	31,796.6	100.0
제1종일반주거지역	1,034.0	-	1,034.0	3.3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3,821.0	-	3,821.0	12.0
제2종일반주거지역	26,938.6	증)3	26,941.6	84.7

※ 변경사유 : 단순 착오(필지 누락)에 따른 면적정정

- 다) 수색8~13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 없음
 라) 증산2~5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 없음
 마) 수색2 존치정비구역(지구단위계획): 변경 없음

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(변경)

구분	구역명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계획		비고
				기준	최대	평균/최고층수	최고높이(m)	
기정	수색1 재정비촉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353	400.0이하	-/24이하	104이하	
기정	수색2 재정비촉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-	-	-/-	-	
기정	수색3 재정비촉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600	780.0이하	-/35이하	130이하	
기정	수색4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10	257.07이하	18.5이하/25이하	80이하	
기정	수색5 재정비촉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549	750이하	-/35이하	130이하	
기정	수색6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이하 60이하	228.4	267.9이하	19.9이하/30이하	92이하	
기정	수색7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10	249.55이하	17.5이하/22이하	66이하	
기정	수색8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10	263.9이하	18.6이하/22이하	64이하	
변경	수색8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10	263.9이하	18.6이하/22이하	66이하	
기정	수색9 재정비 촉진구역	9-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이하	231.3	274.0이하	25.4이하/30이하	92이하	
		9-2 판매시설,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	60이하	281.8	439.9이하	-/22이하	85이하	
기정	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280.0	370이하	-/25이하	104이하	
기정	수색11 재정비촉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360.0	400이하	-/22이하	104이하	
기정	수색12 재정비촉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553.0	760이하	-/28이하	110이하	
기정	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10	240이하	14.8이하/20이하	65이하	
기정	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	2-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이하	210.0	247.7이하	22이하/30이하	92이하	
		2-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이하	210.0	247.7이하	22이하/30이하	92이하	
기정	증산4 재정비촉진구역	2-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이하	210.0	247.7이하	22이하/30이하	92이하	
		2-4 판매시설,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	60이하	261.09	290.9이하	-/25이하	90이하	
기정	증산5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10	247이하	18.1이하/30이하	92이하	
기정	증산5 재정비촉진구역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이하	210	263.7이하	19.7이하/30이하	92이하	
기정	수색2 존치정비구역	복합용도	60이하	-	-	-/-	-	

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(변경)

가) 촉진지구 기반시설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265,800.9	증)3	265,803.9	33.5	-
도로	108,570.3	증)3	108,573.3	13.7	-
보행자도로	5,589.4	-	5,589.4	0.7	-
공원	40,046.7	-	40,046.7	5.0	봉산도시자연공원 포함
녹지	23,776.6	-	23,776.6	3.0	완충녹지1개소, 연결녹지4개소, 경관녹지3개소
광장	2,513.3	-	2,513.3	0.3	3개소
공공공지	2,194.0	-	2,194.0	0.3	1개소
열공급설비	【4,899】	증) 37.9	【4,936.9】	-	중복결정
전기공급설비	【1.4km 중 0.73km】		【1.4km 중 0.73km】	-	수색~향동
공공청사	3,967.0	-	3,967.0	0.5	5개소
학교	69,434.3	-	69,434.3	8.8	5개소
사회복지시설	4,278.3	-	4,278.3	0.5	6개소
도서관	3,781.0	-	3,781.0	0.5	1개소
문화시설	1,650.0	-	1,650.0	0.2	1개소

※ 변경사유 : 단순 착오(필지 누락)에 따른 면적정정(수색7구역)

※ 열공급설비 및 전기공급설비 표시추가

1) 열공급설비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26호(2016.4.28.)에 의한 중복결정(변경) 고시 누락에 따른 정정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5.22.)에 의한 최초 중복결정

2) 전기공급설비 :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151호(1992.5.16.)에 의한 최초 결정

※ 【 】 중복결정 또는 지증시설임

나)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(변경)

(1) 수색1~6 재정비촉진구역 : 변경 없음

(2) 수색7 재정비촉진구역(주택재개발사업)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 반 시 설	소 계	6,431.6	증)3	6,434.6	20.2	
	도 로	5,357.6	증)3	5,360.6	16.9	
	공 원	270.0	-	270.0	0.8	
	녹 지	758.0	-	758.0	2.4	
	학 교	46.0	-	46.0	0.1	

구 분	구역명	구역면적 (㎡)	기반시설면적(㎡)					순부담 (%)
			계획 기반시설	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	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	유상 매입시설	순부담 면적	
기정	수색7재정비촉진구역	31,793.6	6,431.6	1,963.0	—	—	4,468.6	14.1
변경	수색7재정비촉진구역	31,796.6	6,434.6	1,963.0	—	—	4,471.6	14.1

(3) 수색8~13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 없음

(4) 증산2·5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 없음

(5) 수색2 존치정비구역(지구단위계획): 누락사항 표기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24,493.8	—	24,493.8	59.9	—
도로	3,774.3	—	3,774.3	9.2	—
공원	4,936.9	—	4,936.9	12.1	
열공급설비	【4,899】	증) 37.9	【4,936.9】	—	공원과 중복결정
공공공지	2,194.0	—	2,194.0	5.4	
학교	12,980.0	—	12,980.0	31.7	
유치원	608.6	—	608.6	1.5	

※ 열공급설비: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26호(2016. 4.28.)에 의한 중복결정(변경) 고시 누락에 따른 정정

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5.22.)에 의한 최초 중복결정

※ 【 】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

12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(변경)

구분	구역명	전용면적 40㎡	전용면적 40~50㎡	전용면적 50~60㎡	전용면적 85㎡	계
기정	수색1재정비촉진구역	—	—	—	—	
기정	수색2재정비촉진구역	—	—	—	—	
기정	수색3재정비촉진구역	—	—	—	—	
기정	수색4재정비촉진구역	84	84	35	—	203
기정	수색5재정비촉진구역	—	—	—	—	
기정	수색6재정비촉진구역	88	97	23	—	208
기정	수색7재정비촉진구역	45	45	22	—	112
기정	수색8재정비촉진구역	39	39	16	—	94
변경	수색8재정비촉진구역	40	40	19	—	99
기정	수색9재정비촉진구역	57	54	20	4	135
기정	수색10재정비촉진구역	—	—	—	—	
기정	수색11재정비촉진구역	—	—	—	—	

구분	구역명	전용면적 40㎡	전용면적 40~50㎡	전용면적 50~60㎡	전용면적 85㎡	계
기정	수색12재정비촉진구역	-	-	-	-	
기정	수색13재정비촉진구역	108	89	81	-	278
기정	증산2재정비촉진구역	114	99	24	-	237
기정	증산4재정비촉진구역	228	228	139	-	595
기정	증산5재정비촉진구역	120	121	51	-	292
기정	수색2존치정비구역	-	-	-	-	-

13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14) 기타계획(방재계획, 정보화계획, 에너지순환계획, 자족성계획, 특성화계획, 여성친화적 계획) : 변경없음

15) 광고물 관리계획 : 변경없음

16)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17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(변경)

가) 수색1~수색6 재정비촉진구역 : 변경없음

나) 수색7재정비촉진구역(주택재개발사업)

(1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
구 분	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변경	수색7재정비촉진구역	수색동 412 일대	31,793.6	증) 3	31,796.6	수색동 8-17번지 누락 정정

(2) 정비계획

(가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증감	변경		
합 계		31,793.6	증)3	31,796.6	100.0	
기반 시설	소계	6,431.6	증)3	6,434.6	20.2	
	도로	5,357.6	증)3	5,360.6	16.9	
	공원	270.0	-	270.0	0.8	도시자연공원포함
	녹지	758.0	-	758.0	2.4	
	학교	46.0	-	46.0	0.1	수색초등학교
택지 (획지)	소계	25,362.0	-	25,362.0	79.8	
	7-1	25,362.0	-	25,362.0	79.8	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

※ 변경사유 : 단순 착오(필지 누락)에 따른 면적정정

- (나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: 변경 없음
 (다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: 변경 없음
 (라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 없음
 (마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
- 다) 수색8재정비촉진구역(주택재개발사업)
- (1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변경없음
 (2) 정비계획(변경)
 (가)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 (나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: 변경없음
 (다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(변경)
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: 변경없음
 ②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용적률 산정용 면적(㎡)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평균층수/ 최고층수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수색8 재정비 촉진구역	29,998	계	20,426	수색동 16-2번지	53,904.21	공동주택	60 이하	263.9 이하	18.6/22 (64m이하)
			8-1	20,426						
변경	수색8 재정비 촉진구역	29,998	계	20,426	수색동 16-2번지	53,904.21	공동주택	60 이하	263.9 이하	18.6/22 (66m이하)
			8-1	20,426						
변경	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구 분		기정		증감		변경		
		계		550		증) 28		578		
		전용면적 40㎡이하		39		증) 1		40		
		전용면적 40~50㎡		39		증) 1		40		
		전용면적 50~60㎡		142		증) 45		187		
		전용면적 60~85㎡		330		감) 19		311		
		전용면적 85㎡초과		-		-		-		
		■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 ●전체 세대수의 20%이상을 전용면적 60㎡이하로 건설 (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) ●전체 세대수의 60%이상을 전용면적 85㎡이하로 건설 (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1항1호 기준준수) ●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용면적 60㎡이하로 건설하여야 함.								
기정	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	●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~6m ●연도형 상가 구성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격								

(라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없음

(마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부지 면적(㎡)	연면적(㎡)			세대규모	세대수		
		기정	증감	변경		기정	증감	변경
8-1	20,426	6,040.38	증246.64	6,287.02	계	94	증) 5	99
					전용면적 40㎡이하	39	증) 1	40
					전용면적 40~50㎡	39	증) 1	40
					전용면적 50~60㎡	16	증) 3	19
					전용면적 85㎡이하	-		-
적용 기준	-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%이상 - 주거전용면적 40㎡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%이상을 건설할 것 -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㎡초과 40%이하로 건립							

라) 수색9~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: 변경없음

마) 수색2 존치정비구역 : 변경없음

18)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변경)

(1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
			기정	증감	변경	
주거지형	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	수색동, 증산동	793,028.2	증)3	793,031.2	서고제2008-173호 (2008.05.22)

-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명 칭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	수색동 8-17번지 누락 정정 - 793,028.2㎡ → 793,031.2㎡ (증 3㎡)	수색7재정비촉진구역 단순한 착오 (필지누락)에 따른 면적 정정

나)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	면 적(㎡)			구성비(%)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	793,028.2	증)3	793,031.2	100.0
소계			778,327.2	증)3	778,330.2	98.1
주거 지역	일반 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85,049.5	—	85,049.5	10.7
	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150,234.3	—	150,234.3	19.0

구 분			면 적(㎡)			구성비(%)
			기정	변경	변경후	
		제2종일반주거지역	414,839.2	증)3	414,842.2	52.3
		제3종일반주거지역	74,744.2	－	74,744.2	9.4
	준주거지역		53,460.0	－	53,460.0	6.7
	일반상업지역		14,701.0	－	14,701.0	1.9

※ 변경사유 : 단순 착오(필지 누락)에 따른 면적정정(수색7구역)

—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위 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변경사유
	기 정	변 경		
은평구 수색동 · 증산동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㎡	수색7재정비촉진구역 단순한 착오(필지누락)에 따른 면적 정정

다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(1) 교통시설 : 변경없음

(가) 도로 : 변경없음

(2) 공간시설 : 변경없음

(가) 공원 : 변경없음

(나) 녹지 : 변경없음

(다) 공공공지 : 변경없음

(라) 광장 : 변경없음

(3) 유통·공급시설 : 변경없음

(가) 시장 : 변경없음

(나) 전기공급설비 : 변경없음

(다) 열공급설비 : 누락사항 표기

— 열공급설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물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열 공급설비	—	수색동 160-1 일대	4,899	증) 37.9	4,936.9	서고 제2008-173호 (08. 5.22.)	

※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26호(2016. 4.28.)에 의한 중복결정(변경) 고시 누락에 따른 정정

(4) 공공·문화체육시설 : 변경없음

(가) 공공청사 : 변경없음

(나) 학교 : 변경없음

(다) 도서관 : 변경없음

(라) 사회복지시설 : 변경없음

(마) 문화시설 : 변경없음

(5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마.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「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서」에 명시

바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도서 참조
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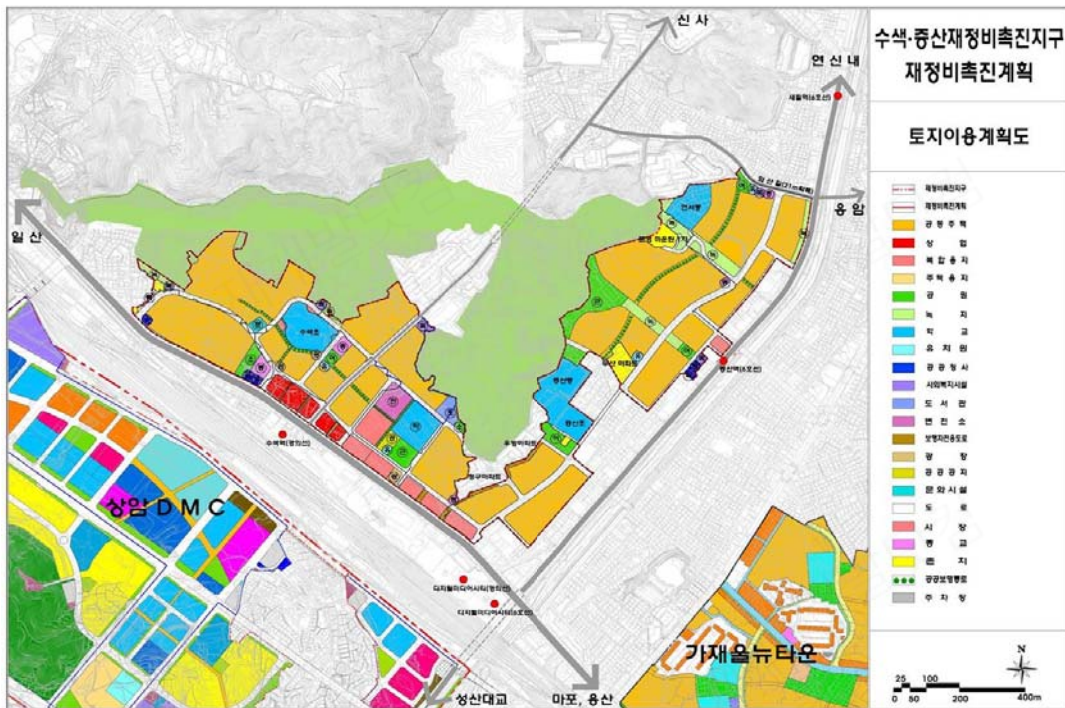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“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”

사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 02)2133-7219)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(☎ 02)351-7433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■ 수색·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: 변경없음



■ 수색·중산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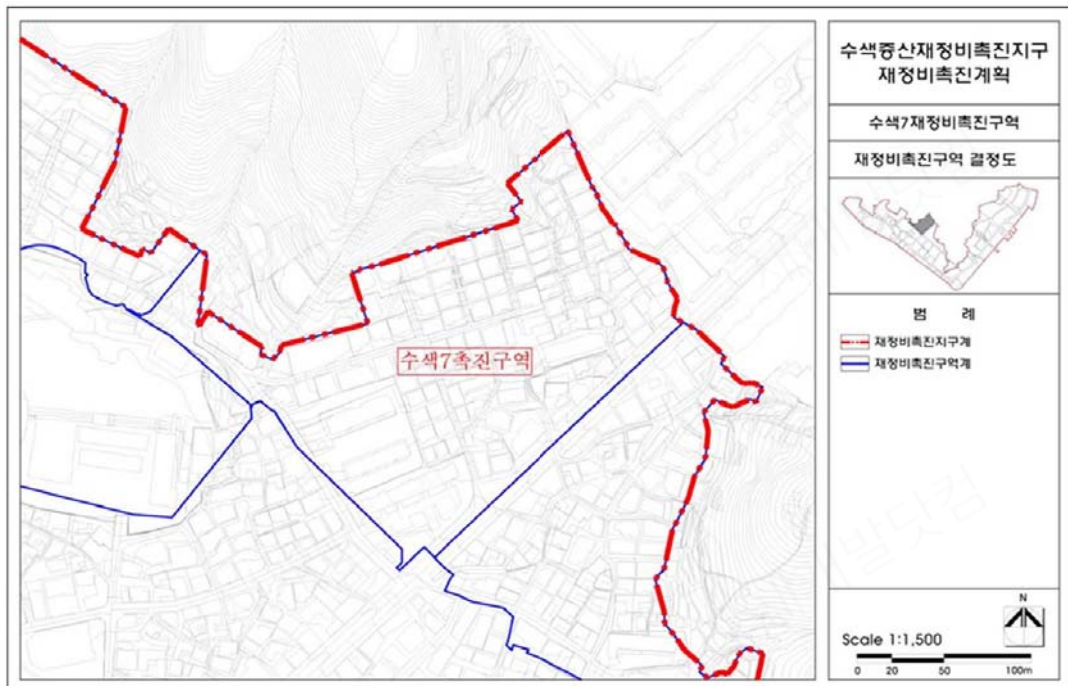


■ 수색·중산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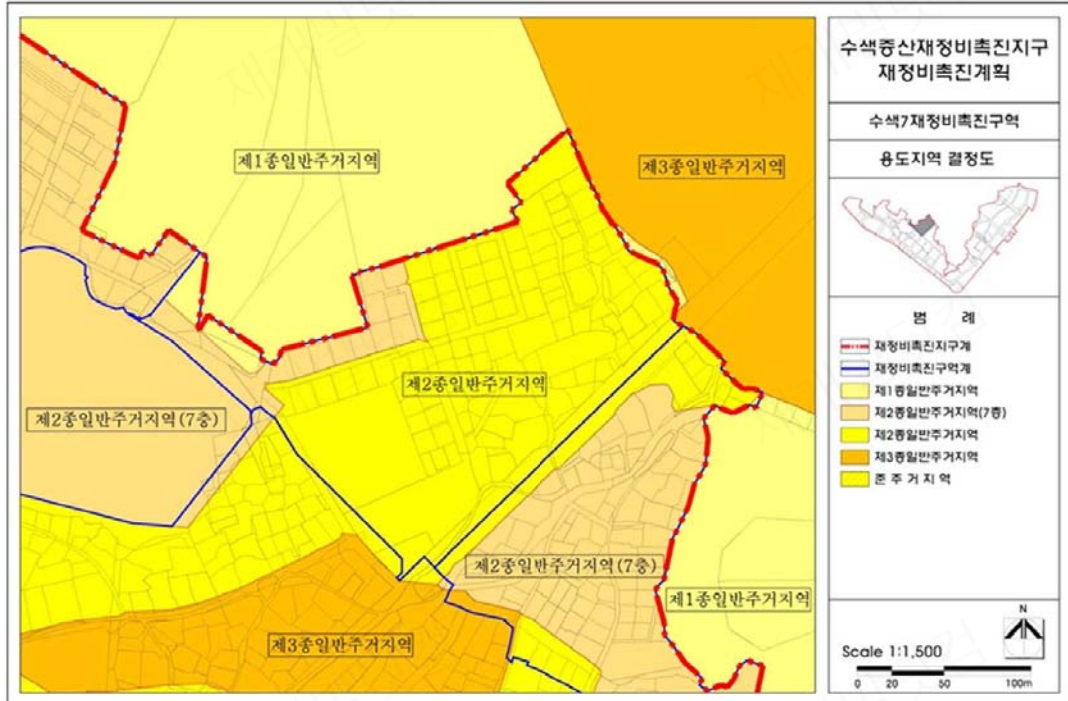


■ 수색7재정비촉진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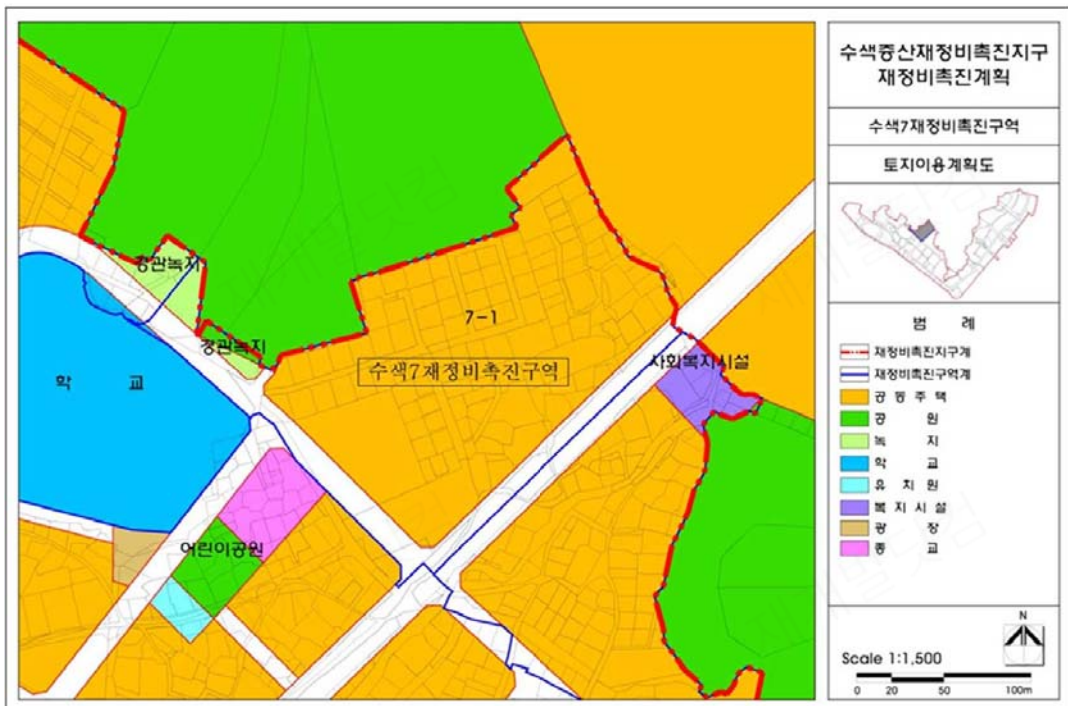
-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: 변경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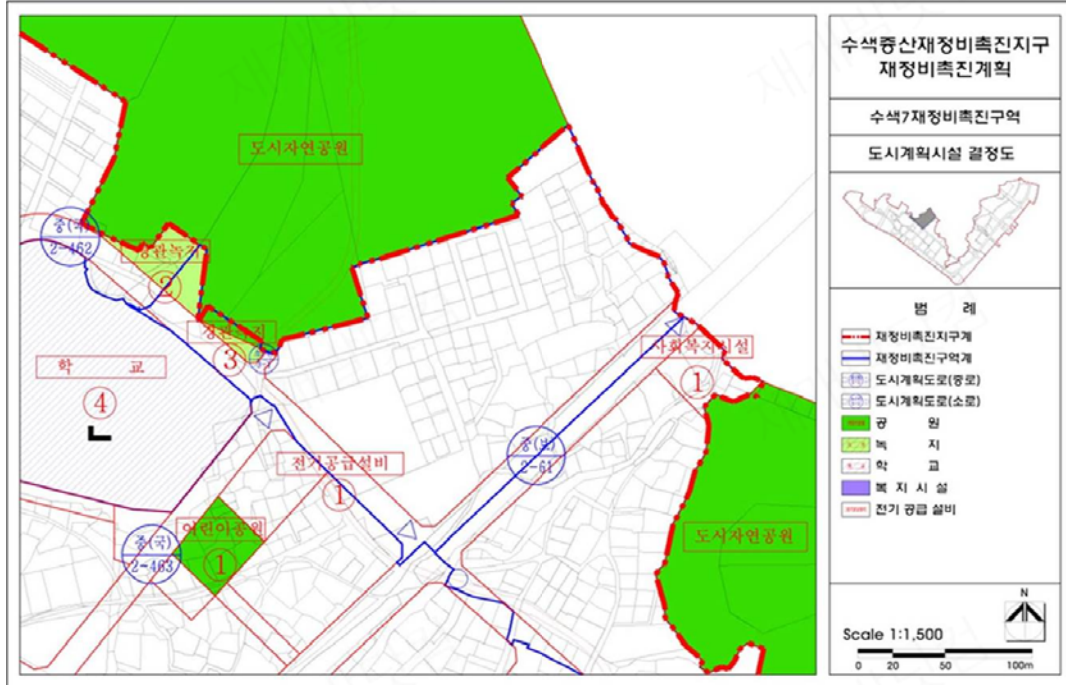
- 용도지역 결정도 : 변경없음



- 토지이용계획도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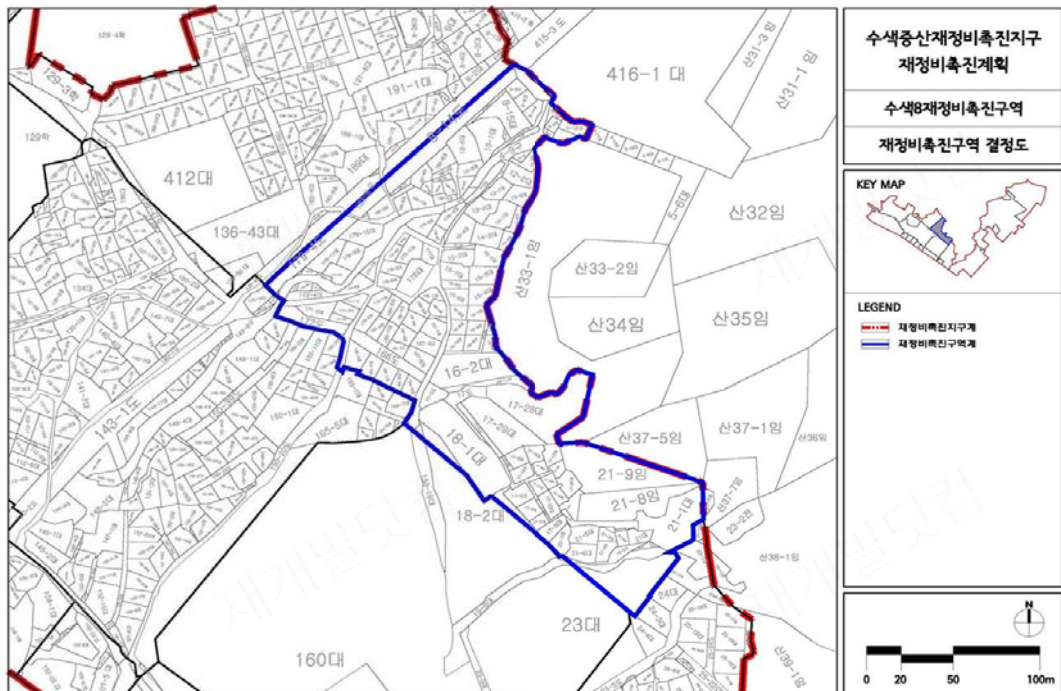


-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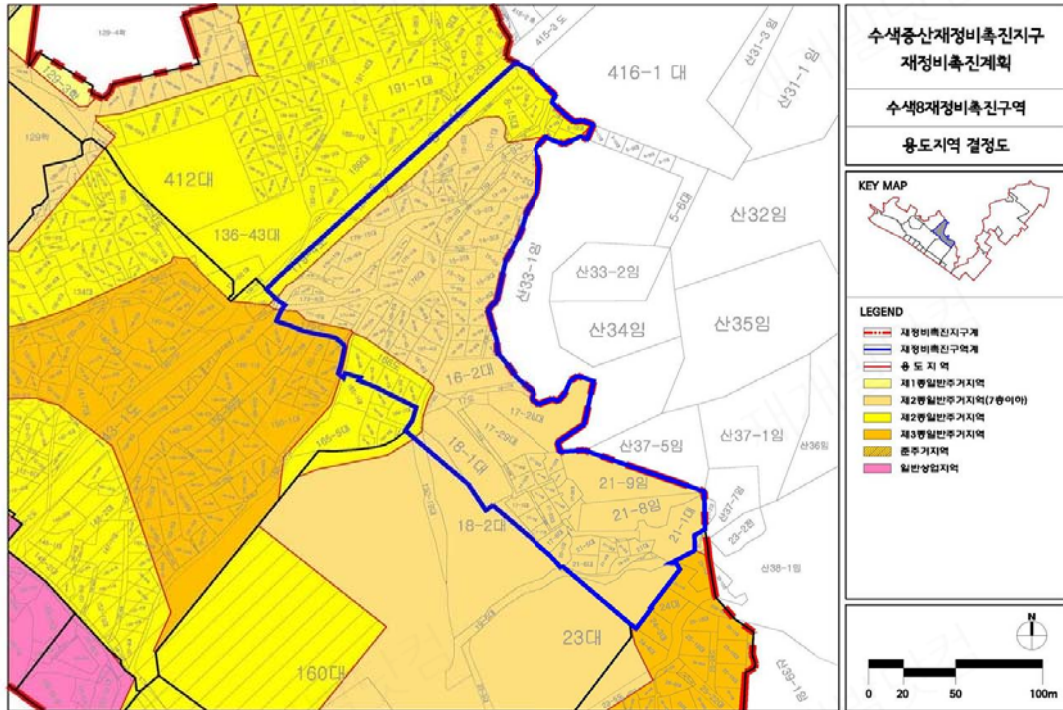


■ 수색8재정비촉진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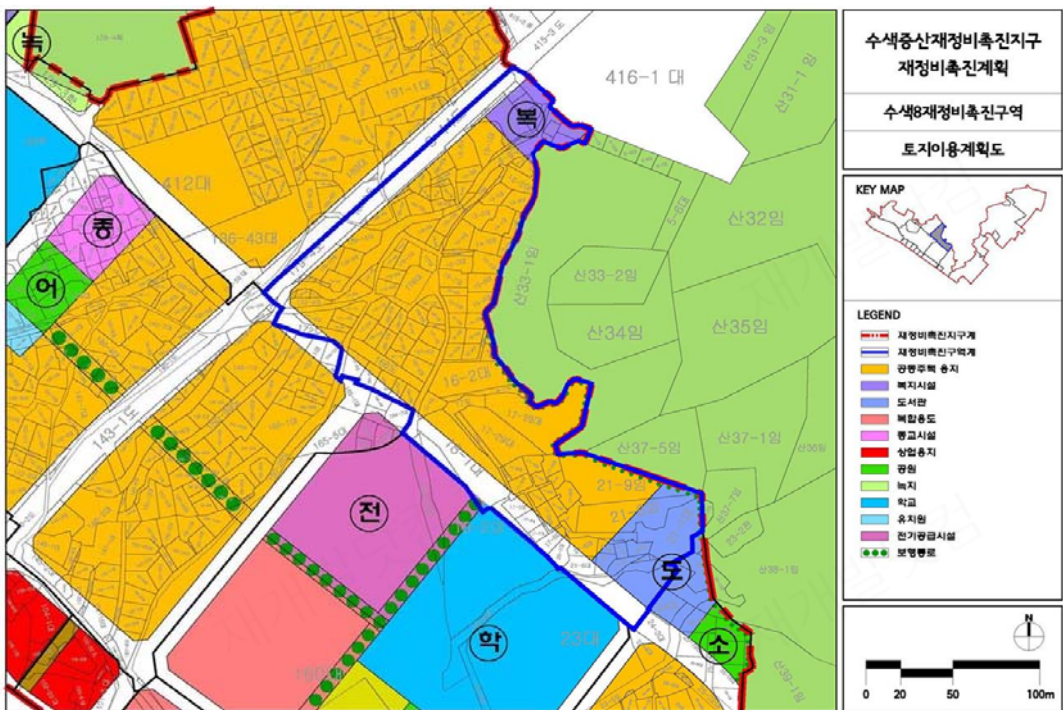
-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: 변경없음



- 용도지역 결정도 : 변경없음



- 토지이용계획도 : 변경없음



-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: 변경없음

